우진일렉트로나이트 - 일반 판매 및 납품 조건 (2026. 09)

1. 적용범위

대한민국에 소재한 우진일렉트로나이트 주식회사(이하 "Heraeus")가 행하는 모든 판매, 납품 및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에는 오로지 본 일반 판매 및 납품 조건(이하 "본 약관")이 적용된다. 고객의 일반 거래조건이 본 약관 또는 적용 법령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거래조건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Heraeus가 고객의 상반되거나 상이한 거래조건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고객의 주문을 수락하거나 이행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조건은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Heraeus와 고객이 개별적으로 달리 합의한 사항(연간 단가계약에 따른 합의를 포함한다)은 상충하는 범위에서 본 약관에 우선한다.

2. 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 (청약, 견본, 보증, 계약의 체결)

2.1 Heraeus의 청약은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계약은 Heraeus가 서면 주문확인서를 발행하거나, 주문된 물품을 납품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한 때에 비로소 체결된 것으로 본다. Heraeus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청약 또는 주문확인의 기초가 된 고객 제공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그 정보에 기초한 주문의 이행이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고객은 주문 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인지한다.

2.2 Heraeus의 데이터시트, 브로슈어, 그 밖의 판촉·안내 자료에 기재된 데이터와 정보는 참고 기준에 불과하며, Heraeus가 명시적으로 서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내용이 된다.

2.3 견본 및 시료의 특성과 성질은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4 제품의 품질, 상태 및 (보관)수명에 관한 정보는 명시적으로 보증임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으로 본다. 조달위험의 인수에 관하여도 같다.

2.5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Heraeus는 관련 대한민국 기술표준에서 허용하는 공차 범위 내에서 제품을 납품하며, 대한민국 기술표준의 준수는 고객의 책임으로 한다.

2.6 제조상 필요한 기술적 변경, 법령의 변경에 따라 필요한 기술적 변경 또는 제품의 개선·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 변경은, 업계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된다.

2.7 Heraeus는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Heraeus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www.heraeus.com/privacy 에서 열람·다운로드·출력할 수 있다.

3. 납품, 납품기간, 포장, 위험의 이전

3.1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및 납품기간은 Heraeus의 서면 주문확인서에 따라 정한다. Heraeus는 업계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 서비스를 분할하여 이행할 수 있다.

3.2 납품기간은 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사항이 고객과 사이에 확정되고, 고객이 Heraeus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신의 필수적 선행 행위를 모두 이행한 때부터 진행한다. 특히 Heraeus가 납품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수령하기 전, 또는 계약상 요구되는 경우 고객이 신용장의 개설, 선급금의 지급 또는 담보의 제공 사실을 증명하기 전에는 납품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한다. 고객이 사후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 납품기간의 진행은 중단되며, 변경 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3.3 제품은 업계 관행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포장한다. 고객이 상자, 케이스, 팔레트 등 특수 포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3.4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납품은 '공장인도(ex factory)'/'공장인도조건(ex works)'(Incoterms 2020)으로 한다. Heraeus가 운송만을 주선하는 경우 발송비용 및 운송보험료는 고객이 부담한다.

3.5 물품의 우발적 멸실·훼손의 위험은, Heraeus가 상차·운송 등 추가 서비스의 수행을 인수한 경우에도, 납품이 이루어지는 공장에서 물품이 고객의 처분 하에 놓인 때에 고객에게 이전된다.

3.6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위험은 이행 준비 완료의 통지가 고객에게 도달한 때에 고객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 Heraeus는 물품이 납품된 것으로 보아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고객의 비용과 위험으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Heraeus는 고객의 비용으로 해당 물품에 관하여 도난·파손·운송·화재·수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며, 그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4. 가격, 지급, 지체

4.1 Heraeus가 제시하는 가격에는 법정 부가가치세, 운송비 및 보험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공장인도조건(ex works)'] (Incoterms 2020).

4.2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외화로 표시된 가격은 청약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환율이 변동한 경우 Heraeus는 주문 후에도 가격을 조정할 권리를 보유한다.

4.3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송장 대금은 송장 수령 즉시 공제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고객은 송장의 전자적 송부에 동의한다.

4.4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송장 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송장 일자로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법률상 당연히, 별도의 최고 없이 월 1%의 이자와 미지급 잔액의 10%에 해당하는 확정 배상금(최소 15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객이 Heraeus와의 다른 계약에 따른 의무를 포함하여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동안, 특히 지급기일이 도래한 송장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Heraeus는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5 고객은 반대채권이 서면상 다툼이 없거나 불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거나 이를 이유로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4.6 고객이 지급을 지체하거나, 통상적인 금융거래 기준에 비추어 고객의 지급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Heraeus는 선지급 또는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만 미이행 서비스를 이행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Heraeus는 어음의 만기와 관계 없이 고객에 대한 모든 채권에 관하여 즉시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7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Heraeus의 귀책사유 없이 수령 준비가 완료된 서비스가 전부 수령되지 아니하거나 수령이 지체되는 경우,

Heraeus는 고객의 비용과 위험으로 물품을 보관하며, 그 보관에 대하여 수령 지체 1개월당 송장 금액의 0.5%를 청구할 수 있다.

5.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5.1 합의된 품질 또는 표준 품질과의 경미한 차이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Heraeus가 제품 브로슈어 등 광고자료에서 제공하는 제품 사용에 관한 일반 정보나 적용 사례가 있더라도, 납품된 제품이 자신의 특정한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를 신중하게 검사할 고객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품의 특정한 용도에 관한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은, Heraeus가 계약 체결 시 해당 제품이 고객이 의도한 용도에 적합함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기준이 된다.

5.2 고객은 자신의 고객이 Heraeus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하자 관련 청구를 지체 없이 Heraeus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Heraeus에 대한 고객의 하자 관련 청구권은 배제된다. 고객은 또한 필요한 형식으로 증거를 보전하여 이를 Heraeus에 제공하여야 한다. Heraeus는 하자의 조사를 위하여 하자가 주장된 제품(관련 증빙서류, 견본 및 포장명세서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반환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이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의 하자 또는 불완전이행에 관한 고객의 청구권은 배제된다. 고객 자신의 고객이 고객에 대해 제기하는 Heraeus의 서비스 관련 하자 청구의 경우에도 같다.

5.3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Heraeus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 없는 제품의 인도로써 추완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객은 Heraeus의 추완이행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하고 그 하자가 경미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5.6조에 따른다.

5.4 손해가 Heraeus의 귀책사유 없이 제품의 부적절한 사용·개조·조립·설치·작동 또는 고객의 잘못된 지시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범위에서 Heraeus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고객이 공급한 재료를 Heraeus가 가공하는 경우, 공급된 재료 자체의 특성·성질에 기인한 하자에 대하여 Heraeus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고객이 공급한 재료가 그 하자로 인하여 가공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객은 Heraeus의 가공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5.5 Heraeus가 명시적으로 보증하거나 조달위험을 인수한 경우의 청구,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유책한 침해로 인한 청구, 결함 있는 제품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제조물책임 법령에 따른 청구 및 Heraeus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그 밖의 청구의 소멸시효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그 외의 물적 하자 및 권리의 하자에 관한 청구권은 위험의 이전 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5.6 Heraeus는 명시적으로 보증 또는 조달위험을 인수한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유책하게 침해한 경우, 제조물책임 법령에 따른 청구의 경우 및 그 밖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책임을 부담한다. 경과실 및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또는 금전적 손실의 경우, Heraeus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불가결하고 고객이 그 이행을 특별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때에만 책임을 부담하며, 이 경우에도 그 책임은 계약상 전형적이고 계약 체결 시 예견 가능하였던 손해로 제한된다. 이행 지연에 대한 Heraeus의 책임은 지연된 서비스 가액을 기준으로 만 1주의 지연마다 0.5%, 최대 5%로 제한된다. 그 밖의 손해배상책임은 청구의 법적 성질을 불문하고 배제된다. 다만, Heraeus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7 위 책임의 제한은 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금액)에 관하여 Heraeus의 법정대리인, 대리인, 피용자 및 그 밖에 Heraeus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소유권 유보

6.1 납품된 모든 제품의 소유권은 고객이 Heraeus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Heraeus에 유보된다.

6.2 고객은 Heraeus가 철회하기 전까지 통상의 영업 과정에서 소유권 유보 물품을 전매하거나 다른 물건과 가공·혼합·혼화·결합할 수 있으며, Heraeus는 언제든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본 조에서 소유권 유보 물품의 전매에는 해당 물품을 토지·건물에 설치하거나,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설치하거나, 다른 계약의 이행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6.3 고객은 자신의 비용으로 소유권 유보 물품에 관하여 화재·도난·수해 등 모든 통상적인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물품을 주의 깊게 취급하며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6.4 고객이 소유권 유보 물품을 전매하는 경우, 고객은 그 전매로 인하여 자신의 고객에 대하여 취득하는 매매대금 채권을 본 약관에 의하여 즉시 Heraeus에 양도한다. 고객이 소유권 유보 물품을 Heraeus가 납품하지 아니한 다른 물품과 함께 전매하는 경우, 위 양도는 Heraeus의 송장에 기재된 소유권 유보 물품의 가액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 제6.2조에 따라 Heraeus가 공동소유권을 가지는 물건이 전매되는 경우, 위 양도는 Heraeus의 공동소유 지분의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양도된 채권은 소유권 유보 물품과 동일한 범위에서 담보가 된다. 양도된 채권이 당좌계정에 계상되는 경우, 고객은 그 채권에 상응하는 당좌계정상의 잔액 채권을 본 약관에 의하여 즉시 Heraeus에 양도한다. Heraeus는 위 각 채권의 양도를 본 약관에 의하여 승낙한다.

6.5 고객은 Heraeus가 철회하기 전까지 통상의 영업 과정에서 위와 같이 양도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며, Heraeus는 언제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이 추심 권한은 고객이 Heraeus에 대한 지급을 지체하는 즉시 별도의 철회 없이 자동으로 소멸한다. 대금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는 경우, 고객은 거래은행과의 사전 약정을 통하여 수령한 금액이 은행의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수령 대금을 Heraeus에 이전할 의무를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eraeus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은 자신의 고객에게 장래 채권이 Heraeus에 양도되었음을 통지하고, 해당 채권의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와 자료를 Heraeus에 제공하여야 한다.

6.6 Heraeus가 보유하는 담보의 총 가액이 Heraeus의 채권액을 10% 넘게 초과하는 경우, Heraeus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선택하는 담보를 해제한다.

6.7 위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소유권 유보 물품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질권의 설정, 담보권의 설정 또는 제6.5조의 채권에 관한 그 밖의 양도 등)도 할 수 없다. 소유권 유보 물품이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경우, 고객은 해당 물품이 Heraeus의 소유임을 밝히고,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도 Heraeus에 통지하여야 한다.

6.8 고객이 지급을 지체하고 Heraeus가 정한 유예기간이 지급 없이 경과한 경우, Heraeus는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도 소유권 유보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7. 불가항력

7.1 당사자 일방의 서비스의 이행이 그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이하 통칭하여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방해·제한되거나 지장을 받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러한 방해·제한·지장의 범위와 기간 동안 해당 이행의무를 면하며, 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Heraeus는 자신의 서비스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그러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7.2 다음의 각 사유는 예시적으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천재지변, 정부 규칙·규정에 따른 작위 또는 부작위, 정부 당국·공무원(통지의 결여 등)·부처·기관·산하기관의 명령, 홍수, 폭풍, 지진, 화재, 전쟁, 폭발, 폭동, 반란, 사고, 적대세력의 행위, 사보타주, 침공,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 2019-nCoV 등을 포함한다), 유행병 또는 격리 조치(유행병·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폐쇄, 국경 통제의 강화 및 통행금지 등을 포함한다), 파업, 직장폐쇄 또는 근로자와의 분쟁, 그리고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금수조치. Heraeus의 공급업체가 위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Heraeus에 불가항력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고객의 대금 적기 지급 의무에 대하여는 불가항력을 원용할 수 없다.

7.3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의 내용과 예상 지속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7.4 각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상업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당사자도 영향을 받은 계약의 대금의 10%를 초과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

7.5 불가항력 사유가 180일간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 해지 통지로써 본 약관에 따라 체결된 영향을 받은 개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 통지 시점에 불가항력 사유가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8. 수출

8.1 제품의 수출입 또는 Heraeus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수출입의 제한, 제재, 쿼터, 금지 또는 필요한 인허가·동의의 미취득(이하 "수출 제한")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해·제한되거나 지장을 받는 경우, Heraeus는 그러한 방해·제한·지장의 범위와 기간 동안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행의무를 면한다.

8.2 Heraeus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법적으로 방해·제한되거나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나, 국내외 규정(특히 수출통제 규정 그 밖의 제재)으로 인하여 Heraeus 또는 그 계열회사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수출 제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8.3 수출 제한으로 인하여 Heraeus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방해·제한되거나 지장을 받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해당 구매주문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8.4 Heraeus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은 최종 수령인, 최종 목적지 및 제품의 사용 목적에 관한 모든 정보를 Heraeus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최종용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일부 무효

본 약관의 각 조항은 적용 법령 하에서 유효하고 효력을 가지도록 해석한다.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법령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무효로 되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는 해당 조항이 속한 조의 나머지 규정 및 본 약관 전체의 적법성·유효성·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Heraeus와 고객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무효인 조항을 본 약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항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10. 준거법, 이행지, 재판관할

10.1 본 약관 및 Heraeus와 고객 간의 모든 합의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국제사법의 저촉규정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0.2 Heraeus의 서비스의 이행지는 납품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하고, 고객의 대금 지급의 이행지는 Heraeus의 등기된 본점 소재지로 한다.

10.3 분쟁에 관한 전속적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Heraeus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당 소송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